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14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「안산시 건축조례」 일부를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실내건축에 대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대상과 주기 정함 (안 제23조의3)
-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 없는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관리대장(별지 제3호 서식) 규정 삭제 (안 제26조제4항)
-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관련하여 1년에 1회로 정함 (안 제33조제2항)
- 이행강제금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5년으로 정함 (안 제33조제3항)
-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재난·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하고 감경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(안 제33조제4항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**
 - 입법예고 : 2018. 3. 3. ~ 2018. 3. 23. 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**
 - 현행조례 : 붙임5
 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볼임 1 >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3(실내건축 검사대상과 주기)**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, 사용승인 신청 시 이를 검사한다.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대행자가 일괄하여 검사한다.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며,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.
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5년으로 한다.
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란 재난·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하며, 이에 관한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건축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건축과장 홍한경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녹색건축팀장 신순식
	담당자 성명·전화	전효진 (행정 2916)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신설〉	<p><u>제23조의3(실내건축 검사대상과 주기)</u></p> <p>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 건축 검사대상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, 사용승인 신청 시 이를 검사한다.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대행자가 일괄하여 검사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
제26조(공개 공지 등의 확보)	<p><u>제26조(공개 공지 등의 확보)</u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
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(생략)	<p><u>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.</p>
〈신설〉	
〈신설〉	<p><u>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며, 법 제8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.</p> <p>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5년으로 한다.</p> <p>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란 재난·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하며, 이에 관한 영 제115</p>

현 행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u>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지 제3호서식] 공개공지 관리대장(제26조제4항 관련)		<u><삭제>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일련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 <tr> <td>위 치</td><td></td><td>건물명</td><td></td></tr> <tr> <td>건축주 주소</td><td></td><td>성 평</td><td></td></tr> <tr> <td>허가일자 (허가번호)</td><td></td><td>사용승인일 (사용승인 번호)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용도지역</td><td>대지면적</td><td></td><td>용 도</td></tr> <tr> <td>공개공지 설치면적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 <tr> <td>공개공지 시설물 현황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 <tr> <td>확 인</td><td>작성자</td><td>건축사사무소</td><td>건축사 날인 또는인</td></tr> <tr> <td>공개공지 평면도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 <tr> <td>설치사진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 </table>		일련번호				위 치		건물명		건축주 주소		성 평		허가일자 (허가번호)		사용승인일 (사용승인 번호)		용도지역	대지면적		용 도	공개공지 설치면적				공개공지 시설물 현황				확 인	작성자	건축사사무소	건축사 날인 또는인	공개공지 평면도				설치사진			
일련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치		건물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축주 주소		성 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허가일자 (허가번호)		사용승인일 (사용승인 번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용도지역	대지면적		용 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개공지 설치면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개공지 시설물 현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확 인	작성자	건축사사무소	건축사 날인 또는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개공지 평면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치사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3142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4월 26일
제 안 자 : 도시환경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감경기간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함.

□ 주요내용

-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함. (안 제33조)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3조제3항 중 “5년” 을 “3년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며,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.</p> <p>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최초 이행 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5년으로 한다.</p> <p>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란 재난·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하며, 이에 관한 영 제115조의4제2항 제2호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p>	<p>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</u>-----.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<신설></u></p>		